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59
------	------

2025.6.1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5.6.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가. 제안이유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는 농식품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무공간 지원,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에 개소하여 운영 중임

-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5. 9.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해 농식품 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지원 기반(국내외 기업·민간 기관과 협력체계 등)을 보유한 기관에 본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 개소일 : 2016. 12. 7.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강동그린타워 8~9층)
- 규모 : 연면적 3,123.84㎡ (8층·9층 각 1,561.92㎡)
- 주요시설 : 입주기업 사무공간, 공유주방(오픈키친), 회의실, 연구개발실, 영상제작공간 등

나.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사무 내용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
 - 입주자 모집·선발·평가, 사용료 징수 등 입주기업 관리
 - 교육·멘토링·네트워크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 위탁기간 : 3년(2025. 10.~2028. 9.)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30백만원(' 25년 4분기) ※ ' 25년 민간위탁금 425백만원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는 2016년 12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261개 농식품 스타트업을 육성하였으며, 그 결과 누적 매출 2,207억원을 달성하는 등 농식품 분야 기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음
 - 농식품 산업 분야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업무는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수 있는 투자·창업 기획 관련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 국내외 다양한 농식품 분야 창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외부 투자 환경 변화에 취약한 초기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기 대응이 필요한 업무임
 -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본 사무를 직영 운영 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조직 확대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운영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2025.9.30.) 예정인 서울먹거리창업센터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¹⁾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²⁾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2.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현황

- 서울시는 농식품 분야의 창업 및 멘토링을 통해 관련 스타트업의 상품 개발을 돕고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2016년부터 서울먹거리창업센터³⁾ (이하 “먹거리창업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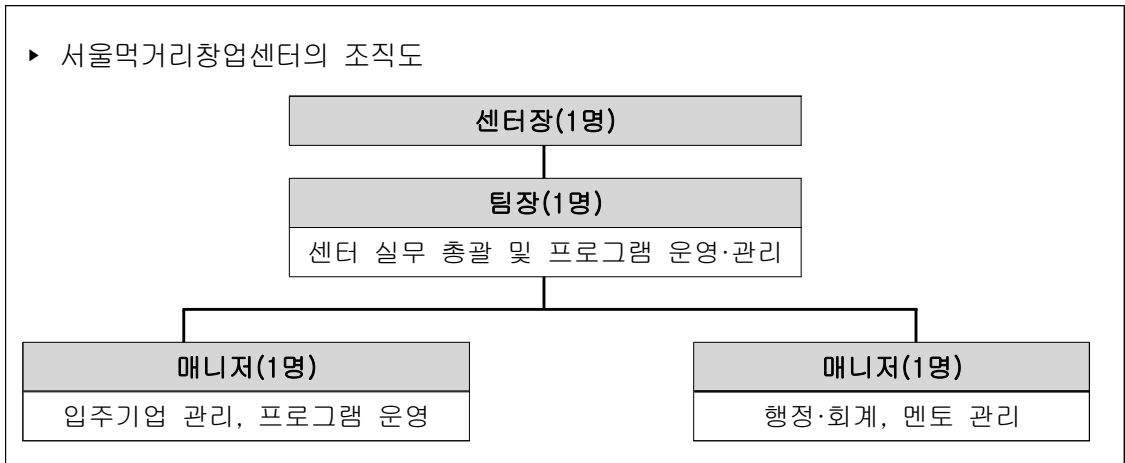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개요 >

- ▶ 시 설 명 : 서울먹거리창업센터(개소일자 : 2016. 12. 7.)
- ▶ 위 치 : 강동구 천호대로 1139(강동그린타워 8,9층), 연면적 3,123㎡
- ▶ 수탁기관 : (주)오픈놀('22. 12. 7.~'25. 9. 30)
- ▶ 예산 : 2025년 예산 : 1,137백만원
 - 사무관리비: 712백만원(임차료 316, 관리비 396)
 - 민간위탁금: 425백만원(인건비 185, 운영비 50, 사업비 144, 이윤 8, 부가세 38)
- ▶ 인력 : 센터장 포함 4명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2조(의회동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3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당초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음.



- 그리고 센터는 창업 초기 단계의 농식품기업에 대해 ▶사무공간 제공,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크 형성, ▶홍보 및 판로 지원, ▶투자유치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 먹거리창업센터는 2016년 12월 개소 이후 현재(25.4.)까지 총 261개 농식품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그 결과 누적 매출 2,297억원, 투자유치 554억원, 고용 창출 1,179명 등의 성과를 기록하였음.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입주기업 주요 성과 >

지 표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4월	계
입주기업 매출액*	85억원	120억원	230억원	210억원	230억원	250억원	699억원	383억원	90억원	2,297억원
입주기업 투자유치액**	19억원	30억원	44억원	127억원	95억원	100억원	65억원	63억원	11억원	554억원
입주기업 일자리창출	60명	77명	144명	245명	224명	206명	152명	64명	7명	1,179명
입주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15건	39건	158건	118건	145건	150건	122건	70건	25건	842건

- 또한 먹거리창업센터에 입주한 퓨처푸드, 유통혁신 O2O 플랫폼 등이 기관투자 유치 성공, 해외 수출 계약과 같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다수의 푸드테크 유망 스타트업을 배출함.

< 입주기업 성공사례 >

기업명	주요 성과	입주 기간
아인푸드 컨넥트	·사업내용: 글로벌 식품 유통 플랫폼 ·성장내용: 러시아 수출 계약('22년), 산자부 무역의날 수출 200만불탑 수상 및 장관 표창('23년)	'22.2.~'24.1.
프레쉬벨	·사업내용: 영유아용 과채주스 개발 ·성장내용: 시리즈A 투자유치(20억원), 중기부 K-에비유니콘 기업 선정('22년), 매출 100억원 달성('23년)	'21.8.~'23.7.
위미트	·사업내용: 국내 최초 균류(버섯)를 활용한 친환경 식물성 대체육 개발 ·성장내용: 입주기간 중 기 투자 10억원 유치, 농식품부 우수 벤처 창업기업 선정('22년), 호주 시장 진출('23년)	'21.2.~'23.1.

- 다만, 현재의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에서 75.33점으로 외형적 실적에 비해 다소 저조한 평가를 받음⁴⁾.
- 이는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등에서 높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및 인력운영, ▶사업성과 중 투자 및 성장지원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고, ▶협약사항 위반⁵⁾의 사안에서는 감점을 받았기 때문임.

< 먹거리창업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지표배점	득점
공동사무	사업인프라	조직 및 인력운영	2.00	1.32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8.00	6.41
		사회적가치 기여	4.00	3.20
	사업활동	사업계획 집행수준	9.00	5.98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3.00	2.51
개별사무	사업성과	투자 및 성장지원	18.00	10.43
		판로지원 및 고용창출	27.00	22.08
		대외적 우수사례성과창출 수준	3.00	2.40
	지도점검 이행노력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6.00	3.00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2.16
사용자만족도	만족도 제고노력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20.00	17.84
감점사항		협약사항 위반		-2.00
합 계			100.00	75.33

4) 2024년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의 평균 점수는 78.52점(61개)임.

5) 협약서 제12조(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제5항에 따라 2023년도 1차 채용 관련 공고 게시 기간 미준수(2023.02.22~2023.03.08게시, 초일불산입 적용시 14일)로 2.00점 감점되었음.

3. 민간위탁 재위탁 타당성

- 민간에 재위탁(공모)하고자 하는 먹거리창업센터의 구체적인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탁사무 내용

-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
- ▶ 입주자 모집·선발·평가, 사용료 징수 등 입주기업 관리
- ▶ 교육·멘토링·네트워크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 그 밖에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 동 사무는 농식품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시장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능력, 그리고 민간 유통·투자 네트워크를 확보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사무로, 일반적인 행정사무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동 사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⁶⁾에서 규정하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제6조제6호⁷⁾에서 규정하는 “산업지원 및 창업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분류됨.
- 또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⁸⁾에서도 시장이 창업지원 시설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역시 명확히 마련되어 있음.

- 특히 센터 운영에 있어 창업기업 발굴,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운영, 투자 유치 및 유통 플랫폼 연계 등은 높은 기획력과 사업화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이는 민간의 전문 역량과 협력체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
- 한편, 2025년 5월 개최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는 먹거리 창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무에 대해 농식품 산업 특화라는 점에서의 차별성과 정체성이 부족하고, 최근 3년간의 성과지표가 다소 저조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그리고 이에 따라 위탁 공고 이전 단계에서 센터의 고유 기능과 정책 방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재검토하고, 성과지표 또한 일반적인 정량지표를 넘어 농식품 창업 맞춤형 지원 성과를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정(권고)’ 의견이 제시됨.
- 이러한 권고사항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재위탁 추진 시에는 단순한 위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센터의 정책 목표 및 기능 재정의, ▶타 창업지원시설과의 기능 중복 해소, ▶성과관리 체계의 내실화 등의 조치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먹거리창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무는 특수한 전문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관련 법령과 조례의 요건을 충족하며, 향후 위원회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경우 민간위탁 방식은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859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는 농식품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무공간 지원,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에 개소하여 운영 중임

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5. 9.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해 농식품 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지원 기반(국내외 기업·민간 기관과 협력 체계 등)을 보유한 기관에 본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함

다.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 개소일 : 2016. 12. 7.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강동그린타워 8~9층)
- 규모 : 연면적 3,123.84 m^2 (8층·9층 각 1,561.92 m^2)
- 주요시설 : 입주기업 사무공간, 공유주방(오픈키친), 회의실, 연구개발실, 영상제작공간 등

나.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사무 내용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
 - 입주자 모집·선발·평가, 사용료 징수 등 입주기업 관리
 - 교육·멘토링·네트워크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 위탁기간 : 3년(2025. 10.~2028. 9.)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30백만원('25년 4분기) ※ '25년 민간위탁금 425백만원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는 2016년 12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261개 농식품 스타트업을 육성하였으며, 그 결과 누적 매출 2,207억원을 달성하는 등 농식품 분야 기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음
- 농식품 산업 분야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업무는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수 있는 투자·창업기획 관련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 국내외 다양한 농식품 분야 창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외부 투자 환경 변화에 취약한 초기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기 대응이 필요한 업무임
-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본 사무를 직영 운영 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조직 확대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운영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5. 5. 9.) 결과 : 적정

※ 작성자 :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 임경진 (☎ 2133-4453)